

##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
해남군 관내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
2023. 5. 25.

해 남 군 수

1. 목 적: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
2. 예고방법: 해남군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haenam.go.kr>)게재
3. 예고기간: 2023. 5. 25. ~ 2023. 6. 13.(20일간)
4. 관련근거  
-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(지정 및 관리) 및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5.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시설 및 위치(붙임 참조)

시설명	지정·해제	위 치	사 유	비 고
계곡 잠두마을 노인보호구역	지 정	계곡면 잠두리 43 일원	마을주민 건의	L=285m
북평 차경마을 노인보호구역	지 정	북평면 오산리 986-2 일원	마을주민 건의	L=250m
북평 신명마을 노인보호구역	지정	북평면 서흥리 1412-1 일원	마을주민 건의	L=220m

### 6. 의견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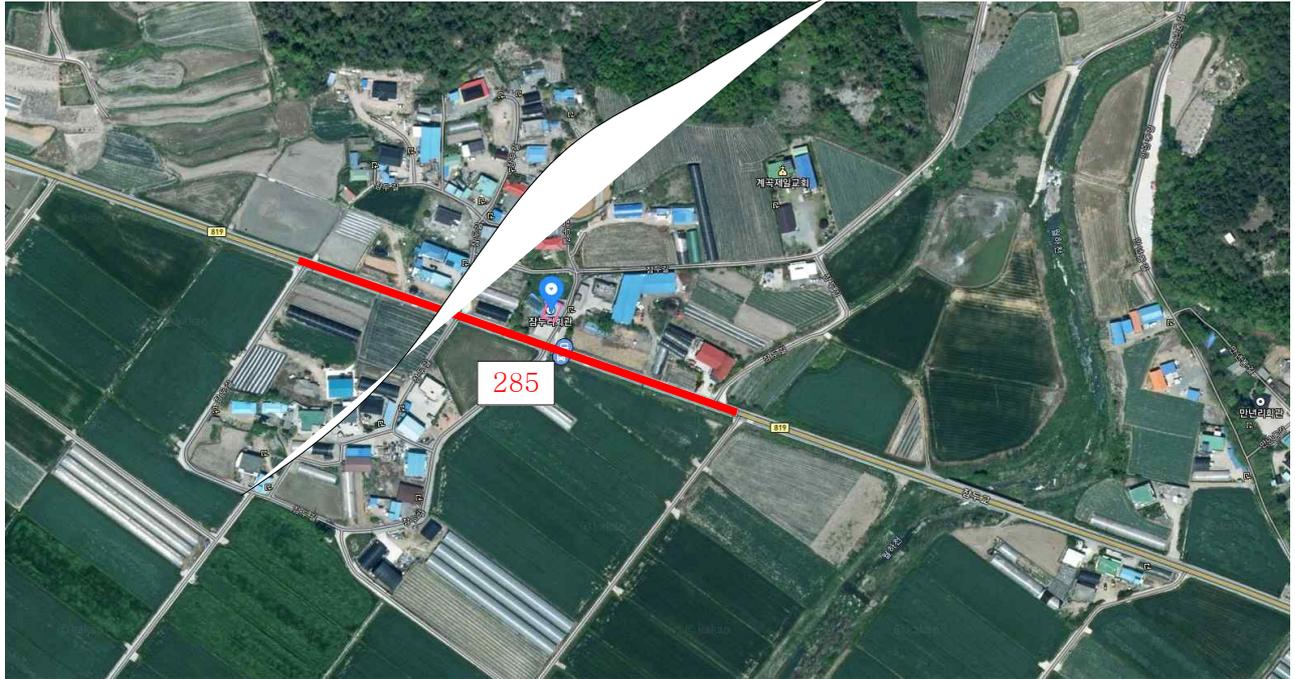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 안전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- 나. 제출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61-530-5834)
- 다. 제출장소: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, 안전교통과(7층)
- 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해남군청 안전교통과(☎061-530-5834)
- 마.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- 붙임 1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도 1부.  
2. 의견제출서(서식)1부. 끝.

# [붙임 1]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시설 및 위치

계곡면 잠두마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(L=285m)  
-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43 일원



북평 차경마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(L=250m)  
-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986-2 일원



**북평 신평마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(L=220m)**  
- 전남 해남군 북평면 서흥리 1412-1 일원



# [붙임 2]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- 예시) 옥천 동리 노인보호구역 지정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해남군수

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